대차중개서비스 핵심설명서

◈ **[주의] 고객님께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설명서는 대차중개서비스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하여 당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되는 자료로서 소비자의 계약 체결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 및 설명서 본문 참조)

◈ 투자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투자에 따른 결과는 모두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 유사한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구분	**증권대차거래**	신용거래 대주
규 정	**대차거래 규정적용**	신용융자 및 대주거래 규정적용
수수료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수수료는 대부분 일률적임
만기일	**만기지정없이 언제든지 상환청구,임의상환 및 해지가능**	일반적인 신용공여와 마찬가지로 2~3 개월로 한정

□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1. 대여중인 주식에서 보전되지 않는 권리의 경우(반대의사, 매수청구) 이사회결의 공시 익영업일 오전 11 시까지 상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공개매수청구를 원하는 경우 공개매수청구 마감일 포함 3 영업일 전까지 상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 대여잔고의 의결권행사 기준일 포함 3 영업일 전까지 상환 신청을 하여야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4. 유상증자: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유상증자의 경우, 상장일 3 영업일후(T+3)까지 대여자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인도하며,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일 3 영업일후(T+3)부터 매도 및 증서 이체가 가능합니다. 단,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지 않는 유상증자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대여자는 행사 기준일 포함 3 영업일전까지 상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5. 일반적으로 거래 되지 않는 종목(거래정지종목 등)은 상환이 지연될수 있습니다. 대여중인 외화증권의 경우 유동성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된 인도일까지 대차증권의 매수 또는 차입이 지연될 경우, 대차증권의 대여평가금액에 해당하는 외화현금을 대여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이 상장폐지 또는 거래정지 상태일 경우

대여자에 상환 요청 후 해외 증권시장에서의 가장 최근 체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하고 이 밖의 경우에는 대여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 지급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6. 해외주식의 경우 발생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권리락일 2 영업일 전까지 대여상환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현금배당, 액면분할 및 액면병합은 대여상환 없이 대여기간 중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7. 대여중인 채권에서 채권 이자 지급일이 확정되기 전 기준으로 T-3 영업일 전까지 상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8. 대여채권의 매도를 원하는 경우 사전에 상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대여채권의 상환신청시 신청일 포함 3 영업일(오전 11 시 이후 신청시 4 영업일) 이내에 고객 계좌로 반환처리 됩니다.

□ 민원·상담이 빈번한 숙지필요사항

1. 대여수수료에 대하여 회사는 기타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기타소득이 연간 합계 300 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나, 연간 기타소득 300 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신고의 대상이 되므로 개별 소득 신고 하셔야 합니다.
2. 대여 중인 증권의 배당소득은 Gross-up 대상에서 제외되어 배당세액공제를 할 수 없으니 결산기준일 포함 3 영업일 이전에 상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3. 대주주,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해당 주식 발행회사 임원 등은 보고 의무자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인 경우 포함)가 대여 거래를 할 경우 지분공시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를 원치 않으시는 경우 해당 주식은 대여불가 종목으로 등록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 상담· 분쟁조정 연락처 및 절차

- 금융소비자는 상품 가입 후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당사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3400), 인터넷 홈페이지 (https://home.imeritz.com)**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민원.신고(https://www.fss.or.kr) 또는 대표번호(국번 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쉽게 이해되는 위험 아이콘

위험 아이콘 (주요 위험)	 ※ 상기 아이콘은 상품의 주요위험을 나타낸 것으로, 자세한 위험은 설명서 상 위험고지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설명서의 내용은 관련 법규의 제, 개정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설명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 및 "대차중개서비스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차중개 서비스 설명서

1. 대차거래제도 개요

대차거래는 대상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대여자가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해당 증권의 차입을 원하는 차입자에게 빌려주고, 차입자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 해당 증권을 대여자에게 반환하는 거래입니다.

대차중개 서비스란 대여자(고객)가 보유한 증권을 회사에 대여하고, 차입자(회사)로부터 대여증권에 대한 대여수수료를 받아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래입니다.

* 대여자(이하 '고객'): '회사에게 증권을 대여하는 자'로 주식을 차입자에게 대여하고 대여기간만큼 대여수수료 수익을 올림
* 차입자: '회사로부터 증권을 차입하는 자'로 주식을 빌려 다양한 운용전략 등을 펼치며, 대여자에게는 일정 수수료를 제공



2. 대차거래 업무절차

가. 대차중개약정 신청 (계좌 개설 및 약정 등록)

① 회사가 정한 위탁 계좌의 개설 (기존 보유자는 해당 계좌 사용)

※ 대차중개약정 불가 계좌: 사고등록계좌, 실명미확인계좌, 입출고 제한 사고등록계좌, 질권&압류계좌, 증거금 미징수 계좌, 비거주 외국인 계좌, 통보처 미선택계좌 등

② "증권 대차중개서비스 약관(대여자용)" 및 본 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약관에 동의하시고 대차중개약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나. 대여가능풀의 구성

① 대차중개의 대상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상장주권, DR,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의 상장채권,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외화증권으로 합니다.

② 고객이 약정을 맺은 계좌의 증권은 대여가능풀로 자동 편입되어 회사는 해당증권에 대하여 활용이 가능합니다.

※ 대여가능풀: 대여자가 대차중개약정을 통해 대차중개신청을 함으로써 대여가 가능한 증권의 총집합(Pool)

다. 대차중개거래의 실행

① 대여가능풀로 구성된 증권들은 고객의 개별 동의 없이 차입자의 수요와 조건에 따라 대여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② 고객분의 대여가 이루어지면 잔고상에 일반주식과 분리되어 대여종목으로 표시됩니다.

③ 신용공여약정계좌의 경우 담보증권은 대여실행이 불가하며, 약관 별첨 1 에서 정하는 담보유지비율(기준 200%, 약관 개정에 따라 변동가능)이상 계좌의 담보 외 증권에 한해서만 대여 실행이 가능합니다.

라. 대여불가 종목 지정

① 고객은 대차중개약정 후, 대여를 원치 않는 종목에 대하여 대여불가 종목으로 지정 할 수 있습니다.

② 대여불가 종목은 종목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수량단위 지정은 불가)

3. 대차중개거래 관련 업무

가. 매도

① 주식 매도: 대여 중인 주식은 미대여 주식과 동일하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

② 채권 매도: 대여 중인 채권은 상환 완료시 계좌 내 잔고 확인 후 매도할 수 있습니다.

나. 상환신청

상환신청이란, 사전에 약정된 대차중개거래 기간 종료 이전 대차중개거래를 조기 종료하는 것으로 신청상환과 매도상환으로 구분됩니다.

① 신청상환: 대차중개거래 시 고객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 중 하나로서, 고객이 대여한 증권을 반환 요청 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 주식은 신청상환을 하게 되면 신청일 포함 3 영업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대여채권의 신청상환시 신청일 포함 3 영업일(오전 11 시 이후 신청시 4 영업일) 이내에 고객 계좌로 반환처리 됩니다. 단, 해외채권의 경우 신청일 포함 4 영업일 이내에 고객 계좌로 반환처리 됩니다.

- 해외증권시장 또는 국내시장의 휴장에 따라 상환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거래정지가 발생한 종목은 거래정지가 해제된 이후 상환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환신청 수량은 매매가능 수량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② 매도상환: 고객이 대여중인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신청상환에 갈음하는 것입니다. 즉, 고객께서는 주식 대여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라도 대여중인 주식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대여중인 채권의 매도를 원하시는 경우 사전에 신청상환을 통해 상환을 받고, 상환된 채권 입고 후 매도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요청이 없다 하더라도 신용공여약정계좌의 대여체결 후 담보유지비율이 약관 별첨 1 에서 정하는 담보유지비율보다 낮아지거나, 주식대여중개자(당사) 혹은 외부차입자의 상환 등에 따라 대여주식은 언제든 상환될 수 있습니다.

다. 수수료

① 리테일풀 거래유형별 수수료 지급기준:
- 신규 대차거래 체결에 활용된 경우: 회사가 체결한 대여수수료율의 50% 이상 (다만, 인덱스바스켓 구성에 활용된 경우 개별 구성종목별로 요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기차입한 리테일풀 주식의 교체에 활용된 경우: 교체전 적용되었던 수수료의 100% 이상
- 회사 취득 수수료가 낮거나 없는 특수한 경우: 최저 보장 수수료율 0.01%
- 기타 제 1 호 내지 제 3 호 이외의 거래로서 수수료율을 사전에 제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 리테일 풀을 활용하는 당시의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사가 정하는 수수료율

② 대여 수수료율: 수수료율은 종목, 수량 및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통상 연 0.01%~4% 수준에서 거래 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여중인 증권의 수량, 수수료 등의 정보는 영업점, HTS, MT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③ 대여 수수료 지급일: 대여수수료는 거래체결 시 확정되는 수수료율을 일일정산하여 익월 20 일 (비영업일일 경우 그전 영업일)에 기타소득세 22%(주민세 포함) 원천징수한 금액이 대여계좌로 지급됩니다.

④ 대여수수료 과세방법: 대여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연간 합계 300 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 할 수 있으나, 연간 합계 300 만원 초과시 종합 과세신고대상이 됩니다.
(연간 누적합계가 5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전 미징수세금 과표와 합산하여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되며, 당월에 발생되는 세금이 대여수수료보다 큰 경우 기타대여금 발생 될 수 있습니다.)

라. 권리

① 국내 대여주식에서 발생하는 유/무상 증자 및 배당에 대해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돌려받게 됩니다.
(단, 단수주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해 실보유 잔고와 배정내역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② 대여잔고의 의결권 행사 기준일 포함 3 영업일전까지 상환 청구 신청을 하여야 해당잔고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③ 반대의사, 매수청구 및 공개매수청구권 행사: 반대의사 및 매수청구의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 공시 익영업일 오전 11 시까지 상환 청구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대의사 및 매수청구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공개매수청구를 원하는 경우 공개매수청구 마감일 포함 3 영업일 전까지 상환 청구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개매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④ 주식배당, 무상증자의 경우 해당 주식의 신주상장일에, 그 발행된 신주 전부에 대하여 기존대여주식과 동일한 조건으로 신규 대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⑤ 유상증자: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유상증자의 경우 상장일 3 영업일 후(T+3)까지 대여자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인도하며,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일 3 영업일 후(T+3)부터 매도 및 증서 이체가 가능하다. 단,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지 않는 유상증자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대여자는 행사 기준일 포함 3 영업일전까지 상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⑥ 감자, 분할, 합병 등의 경우 당해 주식의 상장일자에 대상계좌의 대차수량을 정정합니다.

⑦ 위의 사항은 국내 대여주식에 관련한 내용이며 해외 대여주식의 경우 약관에서 정하는 일부권리(현금배당, 액면분할, 액면병합)를 제외하고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차거래 기간에 해외 대여주식에서 발생하는 의결권, 공개매수, 그 밖의 옵션부 권리, 신주인수권, 유상증자청약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님께서는 권리락일 2 영업일 전까지 대여상환 신청을 완료하고, 고객 계좌에 대여주식이 상환된 이후에 행사가 가능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상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T-5 영업일 전까지 상환신청을 완료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⑧ 대여채권의 반환은 채권 이자 지급일이 확정 되기 전 기준으로 T-3 영업일 전까지 상환신청 하여야 합니다.

⑨ 채권의 만기도래: 채권 만기일로부터 기산하여 T-7 영업일 이전에 상환신청 하여야 합니다.

⑩ 채권의 이자발생: 채권이자는 각 대차거래 건별로 고객의 채권 매수일자를 감안하여 과세 후 지급합니다.

※ 소득세법 제 127 조 제 1 항 제 2 호에 의하여 대여중인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Gross-up 대상에서 제외되어 배당세액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배당세액공제를 원하는 고객의 경우 결산기준일 포함 3 영업일 전에 상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4. 유의 사항

가. 증자, 배당 시 단주 처리

일반잔고와 대여잔고가 분리되어 각 수량에 따라 증자, 배당 등이 결정되므로, 주식 대여로 인해 1 주 미만의 권리가 발생 시에는 절사 되어 실제 배당 수량보다 적은 수량이 배정되어 단수주 대금이 입금됩니다. 이 경우, 당사 임의로 일반 및 대여잔고를 합산하여 배당 처리는 불가능하오니 권리 기준일 3 영업일 이전 상환을 신청하시면 전량 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소득세

대여수수료에 대하여 회사는 기타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원천 징수합니다. 그러나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합계 300 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종합과세 신고대상이 되며 이 경우 당사는 소득신고를 대행하지 아니하고 고객님께서 직접 세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 의결권 행사

국내 주식 대여잔고의 의결권행사 기준일포함 3 영업일전까지 대여상환 신청을 하여야 해당잔고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대여잔고의 경우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권리락일 2 영업일 전까지 대여상환 신청을 완료하시고, 대여한 주식이 계좌에 반환된 이후에 행사 가능합니다. 또한 시장 상황에 따라 상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최소 5 영업일 전 상환신청을 완료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라. 반대의사, 매수청구 및 공개매수청구

반대의사, 매수청구 및 공개매수청구권의 행사: 반대의사 및 매수청구의 경우는 주식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 공시 익영업일 오전 11 시까지 상환 청구 신청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대의사 및 매수청구 신청이 불가하며, 공개매수청구를 원하는 경우 공개매수청구 마감일 포함 3 영업일전까지 상환 청구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개매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마.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대여중인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Gross-up 대상에서 제외되어 배당세액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배당세액공제를 원하는 고객의 경우 결산기준일 포함 3영업일 전에 상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시의무

대주주,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해당 주식 발행회사 임원 등 이른바 5%룰에 따른 보고 의무자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인 경우 포함)가 주식 대여 시, 소유지분 변동에 대한 공시의무 (보유형태가 소유에서 보유 (반환청구권)로 변경 등)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원치 않으시는 경우 해당 주식은 대여불가 종목으로 지정하시는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사항

① 대여주식의 경우 담보평가가 불가능합니다.

② 증권 대차중개서비스를 통해 대여된 주식은 매매거래의 결제, 차익·헤지거래, ETF 설정,담보, 공매도 등 다양한 투자전략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③ 신용공여약정계좌의 경우 약관 별첨 1 에서 정하는 담보유지비율(200%, 약관개정에 따라 변동 가능)이상 계좌의 담보 외 증권에 대해서만 대여 실행이 가능합니다.

아. 위법계약의 해지 요구

- 금융회사가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적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불공정 영업·부당권유 행위 금지위반

 ※ 전문금융소비자: 불공정영업·부당권유 행위 금지 위반

-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 해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 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자. 자료 열람 요구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입니다.

-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 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 받은 날로부터 6 영업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 회사는 법령, 제 3 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설명서 작성 담당자: PBS팀 박성희 대리(Tel. 02-6454-3786)

(내점 및 유선용) 설명직원 확인란_**전자서명은 뒷페이지 참조**

메리츠증권 (　　)팀/센터 (　　)는 상기 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금융소비자 (　　)에게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상품의 특성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 등을 설명하고, 이 설명서를 교부합니다.

⊙ **본 설명서의 내용과 직원 본인이 설명한 내용이 동일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서명 / 인)